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대통령령 제 호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 제목 중 “통계자료”를 “자료”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변동상황등”을 “변동상황 등”으로, “통계자료”를 “자료”로 한다.

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2조의3(입학전형료) ①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.

1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 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 3.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1.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: 과납한 금액
 2.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

3.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
 4.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(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
 5.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: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
- 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·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
- 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- 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.
- 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⑦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료의 반환과 관련한 사항을 입학전형에 응시하

려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
별표 1 중 해당 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해당 호
1. 제29조제2항제2호
2. 제29조제2항제3호
3. 제29조제2항제8호
4. 제29조제2항제9호
5. 제29조제2항제11호
6. 제29조제2항제12호
7. 제29조제2항제13호
8. 제29조제2항제14호

별표 4 제2호차목의 위반행위란 중 “통계자료”를 “자료”로 하고, 같은 호 어목 및 저목을 각각 저목 및 처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호 저목(중전의 어목)의 위반행위란 중 “「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”을 “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”으로 한다.

어. 부속병원을 갖추지 아니한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이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4조제2항제3호 단서를 위반하여 같은 호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서 실습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	해당 의학계열 학과·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	해당 의학계열 학과·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폐지
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부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통계자료의 요구)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재적생의 변동상황등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에 특히 필요한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	제18조(자료의 요구) ----- ----- 변동상황 등----- ----- 자료----- -----.
<신 설>	제42조의3(입학전형료) ①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. 1.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.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

착으로 과납한 경우: 과납한 금액
2.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
3.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
4.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(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: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
5.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: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
③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·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.
④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

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
⑤ 대학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다.

⑥ 대학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⑦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료의 반환과 관련한 사항을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응시원서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
대학설립·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

대통령령 제 호

대학설립·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

대학설립·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부속시설: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학교현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는 것. 다만, 의학·치의학·한의학 관련 학과·학부 또는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2조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교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하여야 한다.

가. 의학 관련 학과·학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교열이 있는 대학: 「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

나. 치의학 관련 학과·학부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교열이 있는 대학: 「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

다. 한의학 관련 학과·학부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

있는 대학: 「한 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」

제6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련의과정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

제10조의 제목 “(기준등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 등)”을 “(기준 등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중 제4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부속병원의 기준 충족 여부 및 실습 의무 준수 여부 등에 관한 평가를 할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부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4조(교사)	①교사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.	제4조(교사)	①----- ----- 따른다.	
	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② ----- -----.		
	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		
	3. 부속시설: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학교현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는 것. 다만, 의학·한의학 및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	3. 부속시설: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학교현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는 것. 다만, 의학·치의학·한의학 관련 학과·학부 또는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2조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하여야 한다.		
	가. 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: 「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	가. 의학 관련 학과·학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: 「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		
	나. 한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			

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:
「한 의사전문의의 수련 및
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
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일
반수련의과정 수련한방병
원의 지정기준

다.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
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:
「치과 의사전문의의 수련
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
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인
턴과정 수련치과병원의 지
정기준

③ ~ ⑦ (생략)

제10조(기준등의 충족여부에 대
한 평가 등) ① (생략)

<신설>

② (생략)

수련병원의 지정기준

나. 치의학 관련 학과·학부
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
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
학: 「치과 의사전문의의
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
한 규정」 제7조제1항에 따
른 인턴과정 수련치과병원
의 지정기준

다. 한의학 관련 학과·학부
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을
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
학: 「한 의사전문의의 수
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
규정」 제6조제1항에 따른
일반수련의과정 수련한방
병원의 지정기준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기준등의 충족여부에 대
한 평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
평가 중 제4조제2항제3호 단서
에 따른 부속병원의 기준 충족
여부 및 실습 의무 준수 여부
등에 관한 평가를 할 때에는 관
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들
을 수 있다.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